##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35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 박홍배·김현정·김한규

강훈식 • 홍기원 • 박희승

김정호 • 황명선 • 안호영

염태영 · 민병덕 · 장경태

강준혁 · 서영교 · 서영석

이재정 의원(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물질의 유출·누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거나 오염토양 발견으로 인한 신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등의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음.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법에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 책임자에게 우려기준이하로 토양을 정화하도록 정화명령을 내리고 있 음.

하지만 정화책임자가 정밀조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정화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화책임자는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토양정화를 계속해서 미루는 상황임.

정밀조사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정화책임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정화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정화를 끝내지 못하면 벌금 등의 처분까지 받고 있음에도 정밀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화책임자는 과태료만 내면 토양정화 명령은 받지 않아도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벌금처분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오염토양부지의 정밀조사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8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18.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 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8.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u>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		
	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u>아니한 자</u>		
제32조(과태료) ① (생 략)	제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u>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u>&lt;삭 제&gt;</u>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			
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u> 아니한 자</u>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